

#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운용하는 첨부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을”이 판매대행(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범위)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2.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4.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채신고 접수 및 처리
6.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7.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제3조(업무협조)

- ① “갑”과 “을”은 집합투자증권의 설정과 해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상황, 기타 위탁판매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서로 긴밀히 교환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상품의 소유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등 기타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 또는 교환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총칭하여 “자본시장법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② “갑”과 “을”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준수의무)

- ① “을”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갑” 및 “을”은 관계법령과 당해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및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감독기관의 명령,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관련법령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사전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판매창구의 분리)

“을”은 영업점 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는 문언이 표시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7조(판매회사의 부당행위 금지)

- ① “을”은 “갑”의 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에 간섭하지 못하며, “을”이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 증권의 매입을 “갑”에게 요구하거나 증권 등의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는 등 “갑”의 자산운용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을” 및 “을”의 계열회사(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3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제8조(투자광고물의 심사)

- ① “을”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투자광고를 할 경우에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편 제3장 투자광고]”(이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규정” 제2-4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승인을 받기 전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수익률의 표시) “을”은 집합투자상품의 광고선전물에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에는 협회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수익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장상 의무기재사항)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증권 저축통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2.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문언
3.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음”을 표시하는 문언

제11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개별 계약 없이도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추가약정)

- ①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이 첨부의 위탁판매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에 추가 또는 변경할 집합투자기구명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첨부에 기재된 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미친다.

제13조(세부사항)

- ① 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 및 환매절차, 장표사용 등은 세부지침에 의한다.
- ③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른다.

#### 제14조(책임)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관할법원)

“갑”과 “을”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6조(집합투자규약 등의 제공)

- ① “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집합투자규약을 “을”의 영업점에 비치하여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 ① 법령의 규정이나 법원,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 기타 사유로 강제되거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상대방 관련 자료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외부 또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 유출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한 본 계약상 어떠한 내용도 광고, 방송, 판촉, 마케팅 기타 활동에 상대방의 이름,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 약어, 유사어 기타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 또는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③ “갑”과 “을”은 본 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위반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④” 갑” 과 “을” 은 본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해지 또는 해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 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18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제8조, 제9조 및 제16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된다.

제19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에 근거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환되는 간접투자기구 및 동법 시행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되며,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갑"과 "을"간 체결한 기존 위탁판매계약은 그 적용을 배제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 과 “을” 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 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4 월 13 일

집합투자업자 (갑) :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회사 (을) :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은행장 강 정 원



<첨부>

## 위탁판매 집합투자기구 목록

2009년 4월 13일 “갑” 과 “을” 간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갑” 과 “을” 은 다음에 명시된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순번	집합투자기구명
1	도이치 브릭스플러스(BRICs Plus) 증권투자신탁 1호 (주식 재간접형)
2	도이치 브릭스플러스(BRICs Plus) 증권투자신탁 U-1호 (주식 재간접형)
3	도이치 포스트일레븐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4	도이치 글로벌 올에셋 증권 투자신탁 2호 (주식-재간접형)
5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6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7	
8	
9	
10	
11	
12	
13	

2009년 4월 13일

집합투자업자 (갑) :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회사 (을) :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은행장 강 정 원



# 세부업무 협약서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9년 4월 13일자로 체결된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에 따른 세부업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갑”과 “을”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계약서와의 관계)

- ① 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기본계약서의 일부로서 기본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기본계약서에 정의된 용어는 세부업무 협약서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 ③ 기본계약서 및 세부업무협약서의 일부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협약서가 우선한다.

제3조(대행표시) "을"의 위탁판매에 따른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광고선전물, 기타안내문 등에는 "갑"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을 명시한다. 다만, "을"이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장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탁판매 범위) "을"이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목 및 판매한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을"에게만 판매토록 하기 위하여 "을"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히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은 "갑"이 "을"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없다.

## 제5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설정)

- ① “을”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그 설정대금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 ② “을”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을”은 일자,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한국예탁결제원 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동시스템을 통해 “을”이 입력한 사항을 확인한 후 설정의뢰 당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집합투자기구 설정대금을 설정일 영업마감시간까지 지정한 자금 결제 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 제6조(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해지)

① "을"이 수익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을"의 환매요청에 응하고 "을"은 이를 환매청구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본 조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갑"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청구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결제)

"갑"과 "을"은 설정, 해지 등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정하는 지정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당일~~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신탁업자를 통하여 설정, 해지, 환매수수료, 투자신탁보수 등과 관련된 자금을 결제한다.

② "을"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등으로 신탁금 등의 납입시 당해 신탁업자의 수탁사무전담부서로 이를 송금 처리한다.

③ "갑"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등으로 해지금(상환금 포함)등의 지급시 해당 신탁업자에 지시하여 "을"의 한국은행 당좌계좌 또는 상호협의를된 "을" 명의의 계좌로 입금 처리하되, 상호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기준가격의 통지)

① "갑"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을 매일 "을"의 영업시간 개시 이전까지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의 통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갑"은 지체없이 지연사유와 통보가능시간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정확한 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산정오류로 인하여 “을” 또는 수익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또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로 인한 수익자 또는 “을”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다만, ①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계부서장의 책임하에 우선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판매보수)

-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을”이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판매보수를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판매회사보수 인출일에 “을”에게 지급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판매관련비용)

- ①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관련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판매관련비용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기타 안내문, 통장 등의 인쇄비용 및 광고비용 등 영업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제11조(자료제공)

-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시 집합투자재산 편입내역을 “을”에게 제공한다.
- ② “갑”은 “을”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안내서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 ③ “갑”은 “을”의 요청시 “을”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 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범위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④ “갑”은 신탁회계기간이나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그와 관련된 결산내역이나 상환내역 등을 “을”에게 통지한다.
- ⑤ “을”은 “갑”의 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현황에 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한다.

상기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4월 13일

집합투자업자 (갑) :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회사 (을) :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은행장 강 정 원

